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
1.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

- 정보제공 범위
- 조사기준일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 내용
- 사용목적 :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

2.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자

○ 화자 인적사항

| 환자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주 소 | 동의확인 (서명)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인 |

○ 동의자 범위(조사대상자 범위) : 환자 가구, 환자의 부양의무자 가구

| 동의자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주 소 | 동의확인 (서명) |
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인 |
| | | | 인 |
| | | | 인 |
| | | | 인 |
| | | | 인 |

| 3 | 독의서의 | 유효기가 : | 잔선익로부터 | 2년 뒤 | 소득재산조사 시 | 만 |
|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|

4. 동의서의 작성년월일 : 년 월 일

5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: _____ 시 구·군 보건소
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

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

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
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기초생활보장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,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

같은 법 제34에 따라 **5년간 보유**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**파기함을 고지합니다.**

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.

| | | 년 | 월 | 일 |
|--|--|---|---|---|
| | | | | |

동의자(환자가구) (서명 또는 인)

시 통합조사팀 **귀하**

<안내 및 유의사항>

- 의료비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대상 자격 박탈
- 동의자(환자, 환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)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